

구직(D-10) 한국어능력 기준 및 법 위반자 제한기준 변경 알림

'24. 5. 14.(화) 법무부 체류관리과

2024. 5. 20.(월)부터 구직(D-10) 점수제의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구직(D-10) 자격 제한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.

1. 구직(D-10) 점수제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변경

- (한국어능력 서류 유효기간) 유효기간이 도과한 한국어능력(TOPIK) 성적 증명서 위·변조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,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
- (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)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뿐만 아니라, 사전평가 점수도 한국어능력으로 인정

현행	토픽(TOPIK)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			
	2급/2단계	3급/3단계	4급/4단계	5급/5단계 이상
	5	10	15	20

<참고> : 토픽은 공식점수표(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,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),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

변경	한국어능력 기준	법	입증 서류
	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/ 한국어능력(TOPIK) 5급 이상	20	-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(한국어민영주자격과정) -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(한국어민구화자격과정) - 한국어민영주자격시험 합격증(KIPRAT) - 한국어민구화자격시험 합격증(KINAT) 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(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)
	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 사전평가 81점 이상 / 한국어능력(TOPIK) 4급 이상	15	-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-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(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) -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(KLCT)(※ 종합평가 합격증) -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(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)
	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/ 한국어능력(TOPIK) 3급 이상	10	-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-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(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) -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(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)
	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/ 한국어능력(TOPIK) 2급 이상	5	- 위의 ① 또는 ②, ③에 해당하는 서류 -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(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) -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(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)

<참고> :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·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,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, TOPIK은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(2년)까지 인정

2. 구직(D-10) 점수제 법 위반자 감점항목 변경

- 처분이 면제되더라도 법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처분액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변경

현 행	출입국관리법 위반 [㉠]			기타 국내 법령 위반 [㉡]			
	구 분	1회	2회 이상	3회 이상	1회	2회 이상	3회 이상
	배 점	5	10	30	5	10	30

<참고> : 항목 간 합산(㉠+㉡)점수를 적용함
 <범례> : ㉠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(단,과태료는 미포함)하며,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
 ㉡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

변 경	출입국관리법 위반(단위: 만 원) [㉠]			형사처벌 전력(단위: 만 원) [㉡]		
	벌칙금 300 이상	벌칙금 100이상~300미만	벌칙금 50이상~100미만	벌금형 300 이상	벌금형 200이상~300미만	벌금형 200 미만
	-30	-10	-5	-30	-10	-5

-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(과태료 미포함), ㉠와 ㉡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(중복 산정)
 - 【주의】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벌칙금을 받아 「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」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

3. 국내 법 위반자 구직(D-10) 자격 제한기준 변경

- 다른 체류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 제한기준 개선

현 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3년 이내 ㉠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 받았거나, ㉡ 통고처분 또는 벌금 합산 금액이 200만원 초과자 제한
변 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벌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「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」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